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3729호

제출년월일 2025. 11. 17.
제 출 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은 특수한 전문성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옥외광고물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 수행 위탁 필요

나. 위탁을 통해 안전점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질적 향상 및 행정 신뢰 구축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범위

＊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)
❍ 벽면이용간판: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
❍ 돌출간판: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 5m이상, 1면의 면적이 1㎡ 이상
❍ 옥상간판: 모든 옥상간판 (제외:직접도료나 입체형, 높이 4m미만 볼링핀 모형)
❍ 지주이용간판: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
❍ 애드벌룬: 높이 4m 이상
❍ 기타: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,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

＊ 안전점검 기준 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)
❍ 옥외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
❍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·사용자재·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
❍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등

나. 안전점검 수수료 : 광고물의 종류·면적·형태에 따라 산정
(※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4 기준)

다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 (3년)

라. 위탁자의 의무

- 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
-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때 그 사실을

즉시 보고 (단, 현장에서 보완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제외)

- 기타 위탁받을 자의 의무는 별도 협약서에서 정함

마. 현 수탁기관 : 경기도옥외광고협회

3. 관계법령

가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나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

다. 「김포시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조례」 제17조, 제 18조, 제19조, 제20조

라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14조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비예산 (수탁기관이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)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기간 : 최대 3년 「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20조제5항

나.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탁기관 연혁

(*최근 3회)

구 분	수탁기관	위탁기간	비 고
수탁기관 연혁	경기도옥외광고협회	2017.01.01. ~ 2019.12.31.(3년)	공개모집
	경기도옥외광고협회	2020.01.01. ~ 2022.12.31.(3년)	공개모집
	경기도옥외광고협회	2023.01.01. ~ 2025.12.31.(3년)	공개모집

소관 실·과·소		클린도시과
입안자	실·과·소장 성 명	클린도시과장 강 지 호
	팀 장 직위·성명	광고물허가팀장 정 종 남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주사보 장 기 영(☎4533)